

19世紀 末~20世紀 初 서울 金融市場의 特質： 南大門 一帶의 ‘日收’ 金融을 中心으로⁽¹⁾

李榮薰 · 趙映俊

본 연구에서는 1890~1907년간에 南大門 일대에서 행해진 日收 金融業에 대해 분석하였다. 규장각 소장의 장부들을 통해, 일수 금융업자와 대부인들이 그들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면적 단골 거래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당시의 일수 금융은 지역적으로 그다지 넓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층의 영세한 상인들과 전업적 금융업자 사이에서 행해진 안정적인 관계였다. 일수 거래의 利子率은 연평균 84%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지만, 이자율과 대부의 조건 사이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는 힘들다. 일수라는 금융형태가 담당한 서울의 하층 금융시장은 대상인들이 속한 상층 금융시장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

1. 머리말

근대적 금융기구와 금융시장이 성립되기 이전, 즉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私金融(私債)은 長利, 市邊, 月收, 日收, 落邊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춘궁기에 쌀을 꾸어주고 수확기에 50%의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長利가 농촌사회에서 생계금융의 일환으로 성행하고 있었던 반면에, 시변, 월수, 일수, 낙변 등은 주로 농촌의 場市나 도시지역에서 상업금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이영훈 외(2004, p. 60)].

장리를 비롯한 농촌사회의 사금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우선 洪性讚(1981)은 개항기에 들어서 상업적 지주에 의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금융업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고, 崔承熙(1997)는 債用文券들을 분석하여 조선후기의 전통 사금융이 주로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 금융의 위험과 거래 비용이 낮았음을 밝혔다. 또한 金載昊(2001)는 조선후기의 사금융이 주로 고리대의 범주로서 고찰되어 온 것을 비판하고, 양반가의 사금융이 수탈적인 고리대 라기보다 사회통합적 조건과 기구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사회에서는 사금융뿐만 아니라 稅에 의한 금융(稅債)이 전통 금융업의 한 형

(1) 이 연구는 제원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태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金載昊(2001)는 계채가 사채와 달리 내부 이자율로서 안정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농촌사회의 금융과는 달리, 도시의 상업금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초단기 금융인 낙변, 보다 중장기인 일수, 월수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업에 종사한 상인들의 거래장부 등의 자료가 거의 혼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금융거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금융거래에서 각각의 금융거래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서울 금융시장은 개항 이후 일본의 금융업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 보다 다층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본에서 들어온 은행은 담보부 대부뿐만 아니라 장기대부를 행하였다. 근대적 민족은행이 등장하는 1896년의 시점이 되면 대부업의 다층성은 보다 확대되었다. 은행을 비롯하여 전당포, 대금포 등이 성행하게 되었고, 가장 영세한 금융기법으로는 일수가 존재하고 있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서울 금융시장에 이와 같은 계층(hierarchy)이 존재했다면 각각의 층위에 있는 금융시장이 단순히 분리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중층성을 띠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서울 금융시장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수 금융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서울 금융시장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資料 및 地域 紹介

본 논문에서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1890~1907년간 서울 남대문 일대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日收’ 금융을 행한 金融業者의 장부인 『順捲長冊』, 『順捲冊』, 『日捲冊』이다. 이 장부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奎寧閣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에 대한 소개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으나[이영훈 외(2004, pp. 62-63)], 본격적인 분석은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日收’란 本錢과 邊利(利子)의 합을 일정한 日數로 나누어 매일 동일한 금액을 수취하는 금융방식이다.⁽²⁾ 대개 일수는 매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항 이후에는 시장에

(2) 朝鮮總督府(1920, p. 690)에서도 ‘日收(일수슈)’ 항목을 “毎日元利を取り立つる貸金”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민지기에 들어서면 이미 일수라는 용어가 사회에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表 1〉各 帳簿別 日收 去來의 狀況

帳簿名	期間	貸付件數	貸付人數
『順捧長冊』	1890. 1. 17 ~ 1894. 11. 20	369	94
『順捧冊』	1891. 11. 16 ~ 1907. 10. 29	979	241
『日捧冊』	1892. 11. 30 ~ 1907. 12. 20	772	197
合計		2,120	532(純443)

서 장날에만, 즉 5일(把收)에 한 번 받는 관습도 있었다. 1905년(光武9)의 『貸金舗規則』에서도 “日收는 每月 六次式 收捧할 事”라고 하여 5일마다 수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 마찬가지로 『順捧長冊』, 『順捧冊』, 『日捧冊』에서도 매일 상환하지 않고 수일 단위로 상환한 경우도 눈에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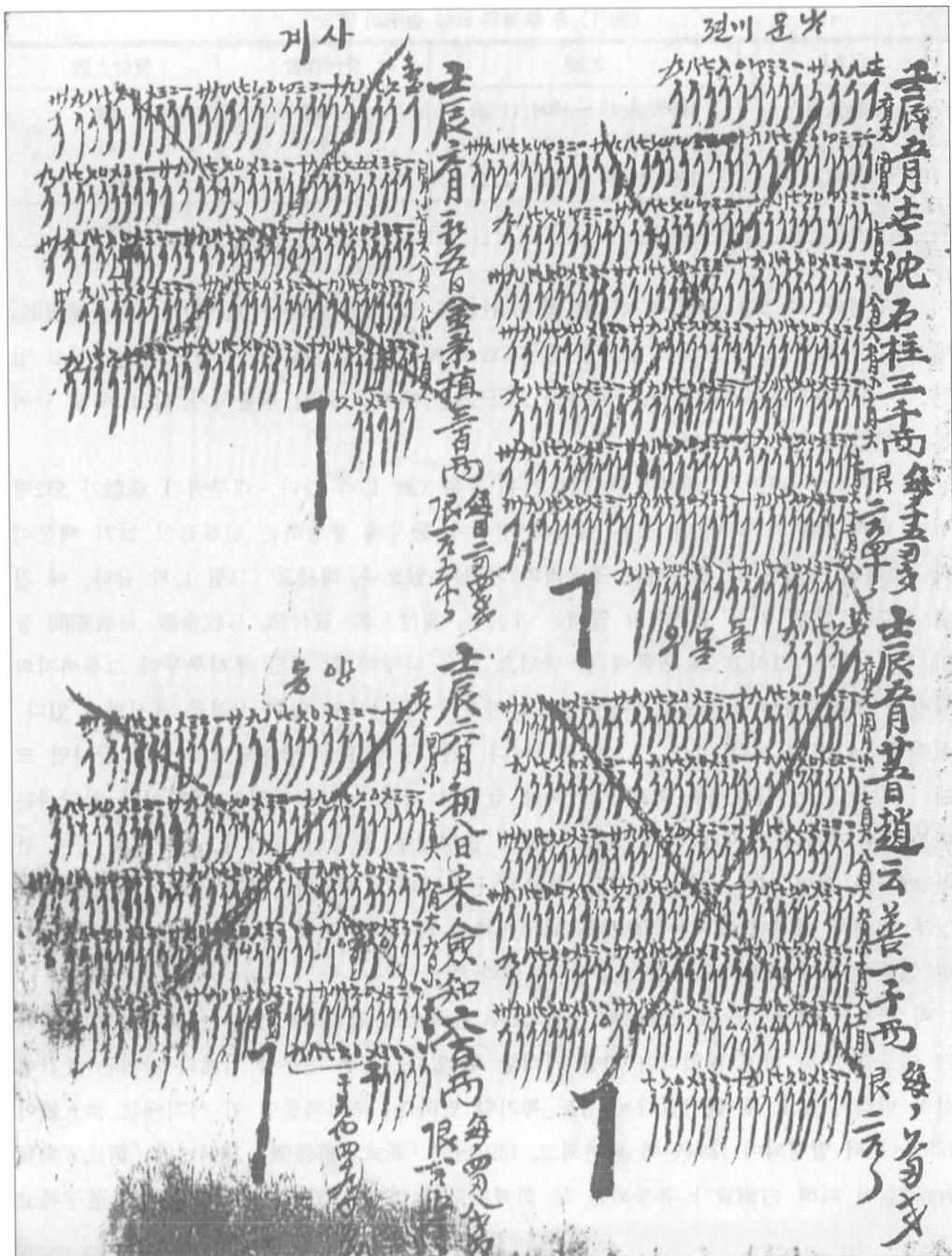
각 장부의 거래기간, 대부건수, 대부인수 등은 〈表 1〉과 같다. 대부인의 總數가 532명 인데 비해 純數가 443명인 것은 複數의 장부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의 형식은 각 장부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림 1〉과 같다. 매 건의 대부에 대해, 가장 오른쪽의 열에는 年月日, 貸付人名, 貸付額, 日收金額, 日收期間 등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월 단위로 행을 나누어 각 행당 초하루부터 그믐까지의 일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하고 그 아래에 각 날짜의 일수 실적을 표시하고 있다. 실적을 ‘×’로 표시한 것은 ‘入’의 의미이다. 원리금이 모두 납부되고 거래가 끝나면 크게 ‘×’를 덮어 씀으로써 거래의 기록을 끝내고 있다. 일수 실적의 상단이나 하단에는 대부인의 가게나 위치가 적혀 있고, 때때로 불량채무, 보증인, 담보물, 연체내역 등에 관한 메모도 되어 있다. 이들 장부를 작성한 금융업자가 누구였는지는 不明이다. 다만 세 장부 중에서 기간이 겹치는 『順捧冊』과 『日捧冊』의 경우, 펼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한 인물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⁴⁾

각 장부의 기록상의 특징으로서 우선 모두 음력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과 1월 초순에는 대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부금 기재의 단위는 중간에 전혀 변하지 않고 兩錢이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에는 嘗五錢이 1883년부터 발행되어 1894년에 혁파되고, 1891년의 「新式貨幣條例」, 1894년의 「新式貨幣發行章程」에 의해 白銅貨가 유통되는 등 화폐제도가 바뀌고 있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3) 『貸金舗規則』에 관해서는 柳子厚(1940, pp. 729-733)를 참조할 것.

(4) 『順捧長冊』은 권말에 ‘大長冊’으로 移記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독립된 장부로 보기는 힘들다.

(5) 화폐제도의 변화에 관해서는 吳斗煥(1991)을 참조할 것.



註：1892년(壬辰) 5월 17일, 25일, 6월 5일, 8일(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림 1〉『順捧冊』의一部



註: 위의 사진은 1894년, 아래의 사진은 1908년의 모습.

資料: 각각 朝鮮日報社(1986, p. 118), 이규현 해설(1986, p. 14).

〈그림 2〉 當時의 南大門 全景

장부상의 화폐단위가 兩-錢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구래의 葉錢을 계속 사용하여 대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정부에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었던 전당포의 경우, 『廣泉鋪典當利益金查正』의 예에서 1901~1903년의 이익금에 대하여 農商工部의 查正을 받는 과정에 신식 화폐단위인 元-錢-里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수업자나 그의 대부인들은 양력이나 신식 화폐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최하층 상인들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마치 경상도·전라도의 농촌에서와 같은 엽전 유통구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술하듯이 세 장부상에서 일수금융의 거래가 행해진 주무대는 남대문 일대이다. 그

〈表 2〉 南大門市場의 名稱 및 年間 去來額 變化 (單位: 円)

연도	명칭	농산물	수산물	직물	기타	계
1909	漢城府西部宣惠倉內市場					934,035
1918	京城府南大門市場	1,970,000	180,000	-	720,000	2,870,000
1926	京城府南大門市場	2,053,600	419,140	14,400	1,509,600	3,996,740
1938	中央物産株式會社市場	1,121,218	869,433	-	100,148	2,090,799

資料：朝鮮總督府(1929, p. 177, 312, 314), 文定昌(1941, p. 142).

중에서도 특히 南大門市場에 대해서는 미리 소개할 필요가 있다. 당시 남대문의 전경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10여년만에 假家들 또는 초가집들이 기와집으로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남대문 안팎에서 전통상업이 성행하였다.

私設市場으로서 남대문시장이 공식적으로 開場된 것은 1911년에 宋秉畯이 朝鮮農業株式會社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남대문 안팎에 전통상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남대문의 성곽 바깥쪽에는 조선후기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亂廳인 七牌가 있었고, 성곽 안쪽에는 宣惠廳 창고 안의 倉內場이 있었다. 남대문시장의 전신을 칠판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1995), 전우용(2000) 등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남대문시장의 연원은 선혜청 창내장의 假家들이다.

이상의 서술을 전제로 하여 정리한 〈表 2〉를 통해 개장전인 1909년부터 식민지기에 들어선 이후에 이르기까지 남대문시장의 명칭과 연간 거래액의 변화 양상을 개관할 수 있다. 거래품목으로서는 농산물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朝鮮農業株式會社에서 中央物産株式會社로 경영주체가 바뀌고 나서 거래가 다소 저조해졌음도 확인할 수 있다.

3. 去來의 對象

본격적인 자료의 분석으로서 우선 거래의 대상, 즉 대부인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으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총 2,120건의 거래 중에서 대부인의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1,379건이다. 그 중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현재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위치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城內와 城外의 약 25개 洞里이다. 그 반경은 남대문을 기점으로 약 3km 이내이며, 이는 일수업자가 도보로 하루 내에 대부인들의 가게를 모두 방문하여 일

수금을 수취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 일수업자가 상업과 대금업을 兼業하고 있었다기보다는 專業의으로 대금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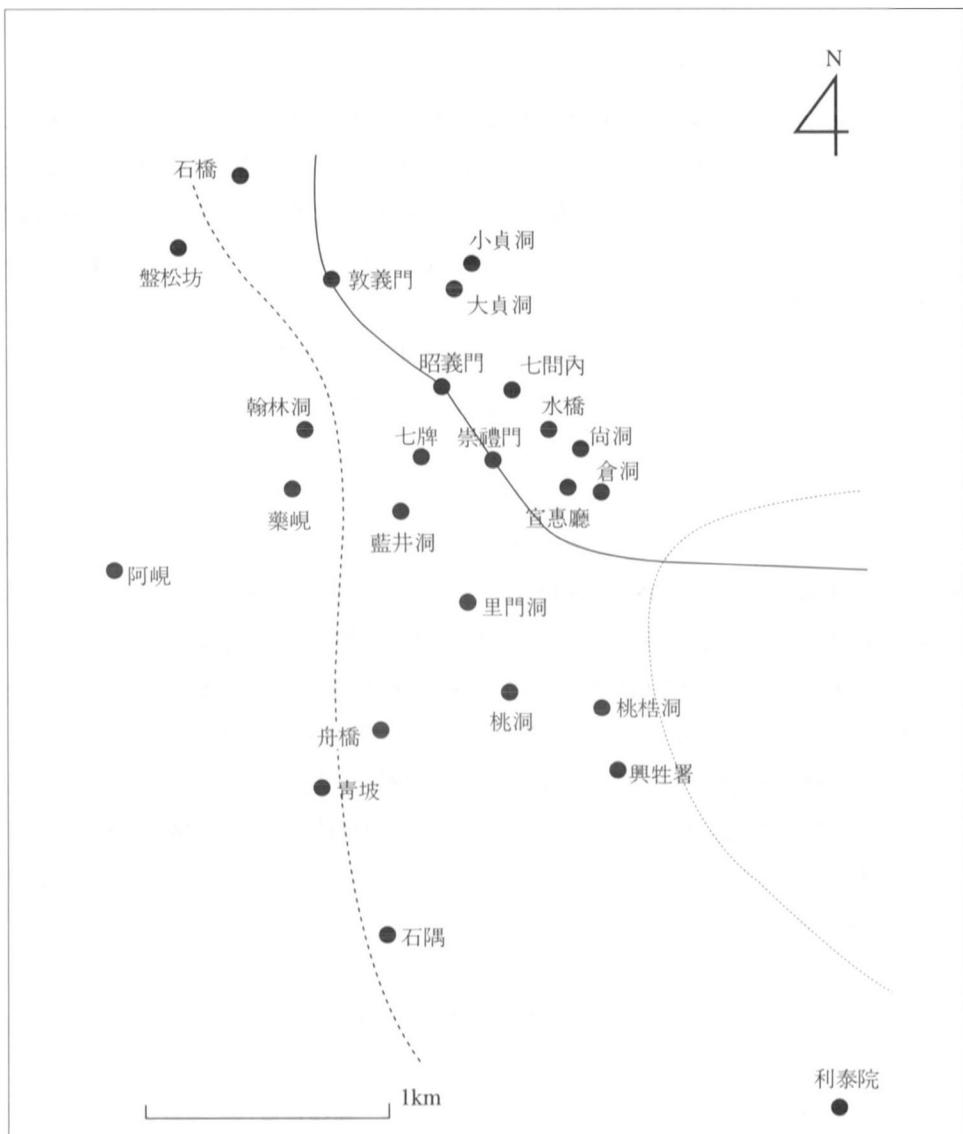
다음으로 대부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총 2,120건 중에서 가게의 이름이나 업종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1,325건이다. 업종은 식료품을 비롯하여 수공업품이나 기호품 등 다양하며, 대체로 100여종 이상이다. 거래의 빈도가 높았던 업종은 米廬(싸전), 床廬(雜商), 酒家, 毛廬(果物廬), 繩鞋廬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이 거래의 주요 대상은 남대문 인근에 가게를 가지고 있었던 상인들이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인의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某人의 자식이나 사위 등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또한 廊人 또는 下人이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일수업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商業金融뿐만 아니라 疦군 등의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生計金融에도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를 받은 상인들의 계층도 大商이 아니라 하층 상인들이었다. 전우용(1997, pp. cccxciv-cdxix)에 제시된 1883~1910년간 韓人會社一覽의 서울 지역 대상인, 즉 회사 대표자들의 명단과 일수장부의 대부인을 대조해 보면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또한 裴永穆(2003, p. 33)에 제시된 皇城新聞 1905년 11월 3일 기사 ‘常民湯產’의 ‘서울의 주요 파산 상인’ 23명 중에서도 일수장부의 대부인과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일수장부들에 대부인으로 등장한 상인들은 전당포 거래 또는 그 이하 수준의 금융거래만을 행한 최하층 상인들이었을 것이다. 金允嬉(2002)에서 대한천일 은행의 1899~1903년간의 어음대부가 주로 대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결론내린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4. 貸付의 規模와 推移

장부의 기록 기간이 짧고 다른 장부와 겹치지 않는 『順捧長冊』은 제외하고, 기록 기간이 겹치는 『順捧冊』과 『日捧冊』의 매년 거래의 건수를 정리한 것이 〈表 3〉이다. 합계 항목을 보면, 정치가 혼란했던 1894년 등 거래회수가 유독 낮은 연도들을 제외하면 1900년 까지 연간 평균 140~150회 정도이다(대부일 기준임). 대부의 1회당 규모는 500~600냥에서 1,000냥 전후까지 점차 커졌는데, 이 사이에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다(後述)는 점을 고려하면 일수 거래의 실질규모는 확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신문』에 의하면 1897년 서울의 쌀 上品 1升이 8錢 정도였으므로,⁽⁶⁾ 대부의 1회당 실질규모는 쌀 上品 4~5石 정도였다.



凡例: ——— 城郭, ----- 河川, 山(南山).

註: 서울역사박물관(2004), 李燦·楊普景(1995), 朝鮮總督府 朝鮮臨時土地調查局 編(198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1977) 등을 참고하여 현재의 위치를 추정한 것임.

〈그림 3〉 日收 去來의 地域範圍

〈表 3〉『順捧冊』과『日捧冊』의 日收去來의 規模와 推移 (規模의 單位: 兩)

年度	順捧冊			日捧冊			合計		
	去來回數	去來規模	平均規模	去來回數	去來規模	平均規模	去來回數	去來規模	平均規模
1891	11	7,300	664				11	7,300	664
1892	144	109,540	766	13	11,300	869	157	120,840	770
1893	90	79,182	880	104	40,200	387	194	119,382	615
1894	34	26,135	769	49	15,540	317	83	41,675	502
1895	69	49,635	719	80	36,184	452	149	85,819	576
1896	60	58,700	978	64	33,172	518	124	91,872	741
1897	83	92,600	1,116	56	42,985	768	139	135,585	975
1898	94	113,248	1,205	58	40,840	704	152	154,088	1,014
1899	74	94,770	1,281	59	31,970	542	133	126,740	953
1900	81	115,402	1,425	62	39,936	644	143	155,338	1,086
1901	63	112,550	1,787	47	45,177	961	110	157,727	1,434
1902	53	98,429	1,857	48	47,477	989	101	145,906	1,445
1903	44	100,750	2,290	38	56,700	1,492	82	157,450	1,920
1904	22	75,700	3,441	28	40,800	1,457	50	116,500	2,330
1905	25	117,000	4,680	23	40,500	1,761	48	157,500	3,281
1906	20	87,000	4,350	24	36,700	1,529	44	123,700	2,811
1907	11	47,600	4,327	18	24,300	1,350	29	71,900	2,479

하지만 1901년 이후에는 거래의 연간회수가 줄곧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일수금융업이 쇠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평균규모는 2배 이상 커졌지만, 1901년부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실질규모의 차이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01년 이후 이 일수업이 쇠퇴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일수업자에 관계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세 장부를 통합하여 1890~1907년간 특정의 대부인과 거래한 회수를 보면, 총 443명 [〈表 1〉] 중에서 10회 이상 거래한 62명(14%)이 총 2,117건⁽⁷⁾ 중에서 48%(1,018건)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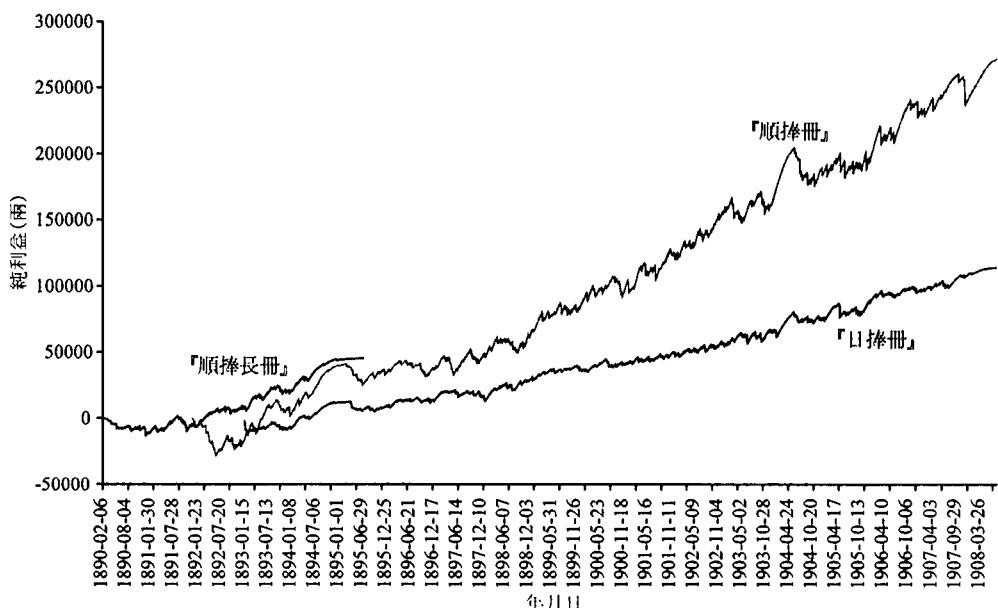
(6) 『독립신문』에는 1896년 4월부터 6월까지는 28회에 걸쳐 서울의 물가가 연속적으로 계재되어 있으며, 이는 당오전을 단위로 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1899년 10월까지 약 7회에 걸쳐 부정 기적으로 당오전 또는 엽전으로 기록된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엽전을 단위로 한 가격을 이용하였다.

(7) 〈表 1〉의 총 2,120건 중에서 인명이 불확실한 3건을 제외한 건수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도 총 건수가 2,120건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기재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불완비한 경우를 일부 제거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지하고 있다. 반면, 5회 이하의 거래를 한 328명(68%)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00건)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이 일수금융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골과의 거래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수업자의 수지상황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대부일에 대부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출(-)로 보고, 일수업자가 매일 수취한 대부금을 수입(+)으로 보면, 누적된 순이익의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세 장부에서 금전거래가 기록된 1890년 2월 6일부터 1908년 7월 30일까지 6,750일간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그것을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 <그림 4>이다. 단, 여기서는 연체나 불량채권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든 대부금이 '일수'의 정의대로 수취되었음을 가정하였다.

<그림 4>를 통해 세 장부에서 공통적으로 일수거래의 전형적 특징이 확인된다. 즉, 대부업을 개시한 초기에는 巨金이 계속 대부됨으로써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으므로 순이익이 陰(-)이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높은 수준의 자금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891년 말부터 대부를 시작한『順捲冊』의 경우를



註: 여기서의 날짜는 모두 양력이다. 음력으로 기재된 날짜를 모두 양력으로 변환함으로써 일수금 수취일의 계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림 4> 各帳簿別 累積純利益의推定

보면, 1892년 6월에 28,600여냥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저점을 찍고,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1893년 6월 초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여 대부업을 종료하는 1908년이 되면 271,000여냥의 순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이는 장부상의 순이익을 단순히 누적한 것이기 때문에 일수업자의 실제 잔고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각 장부별로 추정된 누적 순이익을 이용하여 연간 순이익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연도별로 평균해 보면 『順摺長冊』은 약 8,400냥, 『順摺冊』은 약 16,300냥, 『日摺冊』은 약 7,300냥 정도로 연간 순이익이 계산된다. 후술하듯이 이자율을 무시한 상황에서 약 20%의 순이익이 확보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일수업자의 자본금은 각 장부별로 약 40,000~80,000냥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수업자가 남대문 안팎의 하층 상인들을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었다는 앞의 분석과 관련하여,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대부업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전당포와 비교해 보자. 1898년(光武2년) 11월 2일에 제정된 법률 제1호 『典當鋪規則』에 의하면 〈表 4〉와 같이 資本錢에 따라 점포를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898년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석 대상의 일수업자는 각 장부별로 전당포로 치면 상등포 2~4개에 해당하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서울에는 『典當鋪規則』이나 『貸金鋪規則』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할 정도로 대부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었다.⁽⁸⁾ 또 각 전당포나 대부업자는 그 특성상 포괄하는 지역범위가 좁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세 장부를 합쳐 보았을 때 일수 방식의 금융업은 남대문 안팎의 하층 금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업을 운영할 정도의 자금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로 영세한 하층상인들 또는 전당포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층민들을 위주로 한 단골 고객들과의 대면거래 방식으로 운영

〈表 4〉 『典當鋪規則』의 店鋪 區分 (單位: 兩)

區分	資本錢	定稅月額
上等鋪	20,000~	10
中等鋪	10,000~19,999	7.5
下等鋪	2,000~9,999	5

(8) 『典當鋪規則』이 제정되기 전의 典當鋪數에 관해서는 『독립신문』의 “오셔조니에 대포가 둑쳐요 쇼포가 칠십 둑쳐 도합 팔십 이쳐(1897.4.15.)”, “서울 안에 면당국이 이빅여쳐(1897.4.20.)” 등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되었을 것이다.

5. 利子率

조선후기의 이자율은 주로 고리대였다고 지적되어 왔듯이 개인, 즉 상인이나 지주에 의한 사채의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도 연리 40~50% 수준이었고, 계체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연리 30~40%대였다. 이는 주로 농촌 이자율인데, 연리 40~50%는 당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자율이며, 장기적인 하락추세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후기의 공정이자율은 1744년(英祖22)의 『續大典』에 정해져 있었던 20%였는데, 농촌의 사금융에서는 이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세 일수장부에서의 '원금 대 이자 비율'은 기본적으로 20% 수준이다. 여기서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원금 대 이자 비율'이라고 한 것은, 기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냥을 대부하여 20%(-20냥)를 더한 120냥을 수취하는 경우, 120일간 매일 1냥씩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고, 60일간 매일 2냥씩 수취할 수도 있다. 양쪽 모두 元利의 합계가 同額이고 '원금 대 이자 비율'도 20%로 같지만, 분명히 두 채권의 수익률, 즉 이자율은 다르다(後述). 〈表 5〉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120건 중에서 1,927건(91%)의 '원금 대 이자 비율'이 20%이다. '원금 대 이자 비율'이 10%인 경우는 149건(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세 장부의 '원금 대 이자 비율'은 기본적으로 20%이다. 이는 이 일수금융업이 공정이자율에 심각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며, 지방의 농촌이 아닌 서울의 도심에서 이루어진 금융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원금 대 이자 비율' 20%의 일수대부로부터 이자율을 도출해 보자. 이자율을 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을 계산

〈表 5〉 세 帳簿에서의 '元金 對 利子 比率' 分布

장부명	대부건수	'원금 대 이자 비율'		
		10%	20%	기타
『順摺長冊』	369	61	302	6
『順摺冊』	979	43	914	22
『日摺冊』	772	45	711	16
합계	2,120	149	1,927	44

함으로써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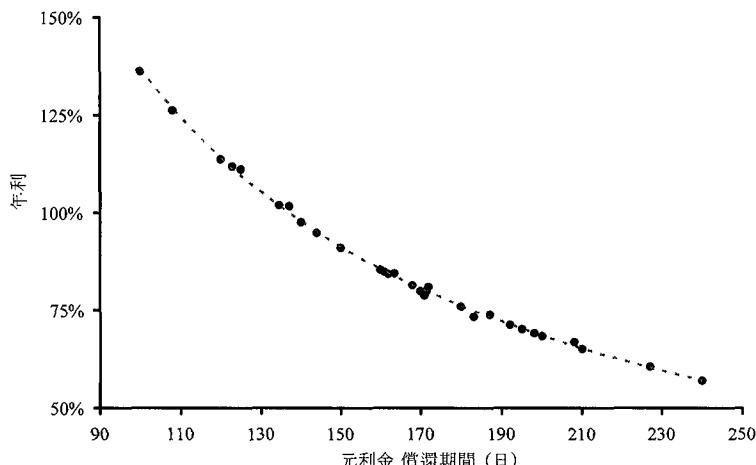
$$\text{元金} = \frac{\text{日收金}}{1+IRR} + \frac{\text{日收金}}{(1+IRR)^2} + \cdots + \frac{\text{日收金}}{(1+IRR)^n}$$

$n = \text{償還日數}$

여기서 원금과 일수금의 관계는 언제나 “ $1.2 \times \text{元金} = n \times \text{日收金}$ ”이기 때문에, 일간 내부 수익률은 상환일수 n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이자율은 오직 상환일수와 상관관계를 가질 뿐이다. 일간 내부수익률이 계산되면 그것을 365배하여 年間 内部收益率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곧 年利가 된다.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먼저 전체 대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00일 이상 240일 이하의 기간으로 이루어진 대부건들에 한하여 기간당의 연간 내부수익률을 구하여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경기전망이나 거래상대의 신용상태를 반영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환기일만이 다른 거래가 행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현상이다.

전체 대부의 평균 年利는 84%이며, 이는 의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註: 점선은 추세선이다.

<그림 5> 利子率의 期間構造(term structure)

농촌고리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아무튼 여기에 당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일수금융의 실질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당시 서울의 물가는 1900년까지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1901년 이후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수금융의 실질이자율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형태의 대부업과 비교함으로써 일수금융의 이자율 수준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1898년(光武2년) 11월 10일의 農商工部令 제31호『典當鋪細則』에는 <表 6>과 같이 전당포의 典當利息를 규정하고 있다. 전당포의 이식은 일수금융의 이자율과는 달리 원금의 크기에 의해 규정되었다. 가장 이자율이 높은 원금 20냥 이하의 거래에는 월 5%, 즉 연 60%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일수금융의 평균금리보다는 다소 낮지만 농촌의 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고금리였다.

1906년(광무10년) 9월 24일의 법률 제5호『利息規例』에서는 계약상의 이식이 원본액에 대하여 연 4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식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이 없을 때에는 원본액에 대하여 연 20%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이자를 제한한 것은 전당포나 일수금융의 금리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금융 이자율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제도적으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2. 8. 26) 및 동법률시행령(2002. 10. 28)에 의해 원금 3,000만원 이내의 대부는 연리 66%로 제한되어 있다.⁽⁹⁾ 하지만 금융감독원(2005, p. 22)에서 2004년 현재 사금융 평균금리를 연 223%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무등록을 불문하고 사금융 금리는 법정금리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금융의 한 형태로서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일수 금융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表 6> 典當鋪의 典當利息

葉錢計(兩)	利息
1~20	月 5分
21~100	月 4分
101~1,000	月 3分
1,001~2,000	月 2分
2,001~	月 1分

(9) 이 법률은 2005년 하반기에 보다 제재가 강한 형태로 개정될 예정이다.

6. 償還期間

일수대부의 이자율이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다면,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부인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대부인에게 긴 기간의 대부가 주어졌는지가 이 일수금융업의 특질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물론 돈을 빌리는 용도에 따라 대부의 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의 용도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장부에서 일수대부는 주로 200, 150, 120, 100일 등을 단위로 행해졌는데, 특히 200일인 경우가 총 2,106건 중에서 988건(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表 7>은 대부의 건수를 1개월(30일) 단위의 상환기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상환기간의 평균은 169일이다.

여기서 가장 긴 기간인 241일 이상의 구간에 속하는 대부거래 14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 거래들을 행한 대부인은 13명이며(1명이 2회 거래), 이들이 행한 모든 기간의 대부거래 건수는 103건이다. <表 1>과 비교해 볼 때, 전체 대부인 중에서 이들 13인의 평균 거래건수가 약 2배 정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表 8>에서 이 103건의 대부의 기간 분포를 보면, 200일 미만의 짧은 기간도 보이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래가 반복되면서 신용이 쌓이게 되어 점차 긴 기간의 대부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다.⁽¹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表 7> 償還期間別 去來件數

償還期間 (日)	0~30	31~60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856	합계
件數	3	34	22	464	384	75	1,011	99	14	2,106
比率	0.14%	1.61%	1.04%	22.03%	18.23%	3.56%	48.01%	4.70%	0.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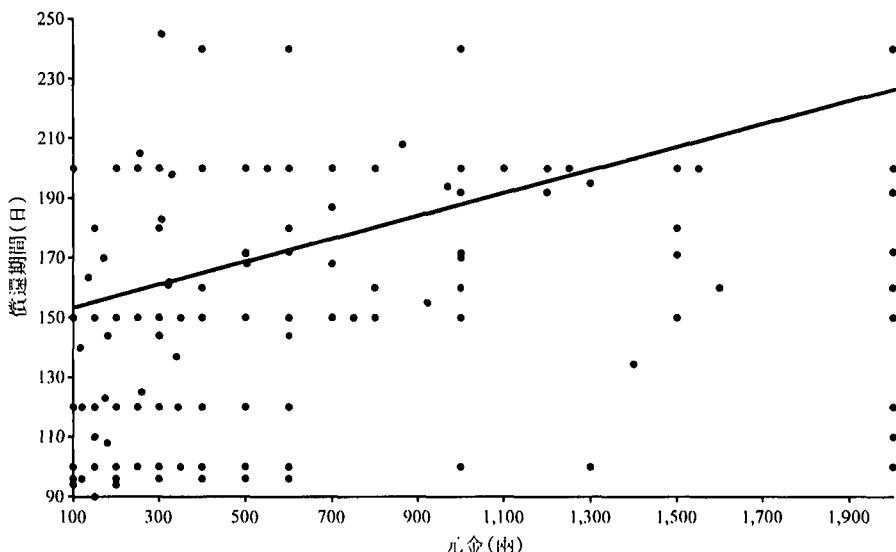
<表 8> 償還期間이 8個月 以上인 13人の 總 貸付件數의 期間 分布

償還期間 (日)	0~30	31~60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856	합계
件數	2	5	0	8	27	6	37	4	14	103
比率	1.94%	4.85%	0.00%	7.77%	26.21%	5.83%	35.92%	3.88%	13.59%	100%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와 같이 유리한 대부가 특정의 신뢰관계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면, 대부액 등의 다른 기준이 있었던 것일까? 아래의 <그림 6>, <그림 7>은 총 대부를 대상으로 상환기간과 대부액 및 일수금의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異常值(outlier)를 제외하고 散點圖(scatter diagram)를 그린 것이다. 이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환기간과 대부액의 크기나 일수액의 크기는 별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는 『貸金舗規則』에서 “日收는 二十元 以下是 八十日이요 二十元 以上은 百日爲定할事”라고 하여 대부액의 크기에 따라 상환기간에 차등을 둔 것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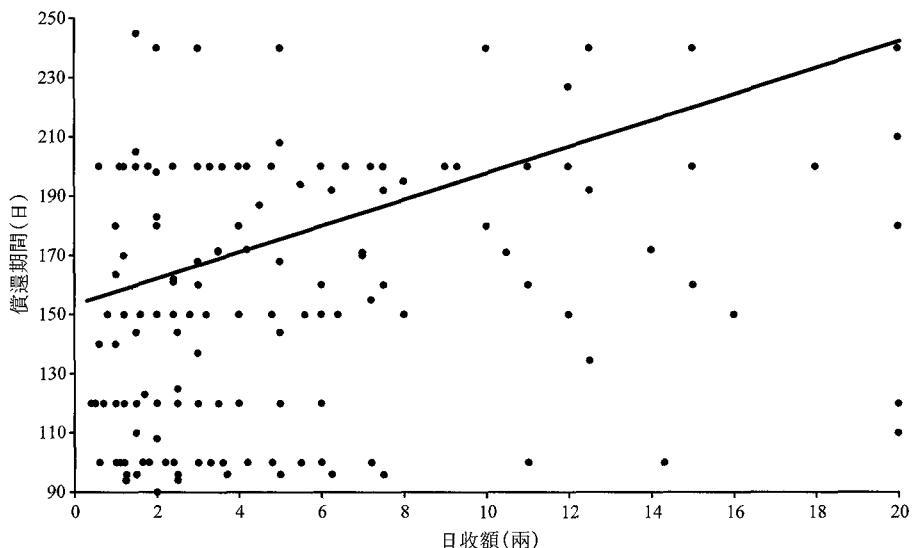
그렇다면 <表 5>에서 본 ‘원금 대 이자 비율’이 10%인 149건의 거래를 행한 대부인들은 이 일수업자와 어떤 관계였을까? 그들은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받음으로써 일수업자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49건 중에서 123건이 상환기간이 100일에 불과한 대부이므로, 이자율이 낮은 유리한 조건의 대부였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註: 실선은 추세선.

<그림 6> 償還期間과 貸付額의 相關關係

(10) 실제로 『順捲冊』과 『日捲冊』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인인 千君明의 경우 총 33회의 거래를 했는데, 초기에는 150일 만기의 거래를 하다가 이후에는 180일, 200일, 300일 등의 거래를 하였다.



註: 실선은 추세선.

〈그림 7〉 償還期間과 日收額의 相關關係

7. 保證人과 典當

세 일수장부에서는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담보로는 보증인이나 전당을 설정하고 있다. 보증인이 설정된 경우에는 保人 某氏 또는 保 某氏 등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전당물은 주로 家卷(집문서)이었는데 有家卷, 家卷典當 등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집문서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우선 보증인 설정에 대해 살펴보자. 전체 거래 중에서 보증인을 설정한 경우는 136건 (6.4%)이다. 보증인의 설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인을 세운 대부분의 원금은 50냥부터 5,000냥까지 다양하다. 즉 채무액의 크기와 보증인의 유무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둘째, 기간이 200일을 넘는 대부분에 있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셋째, 보증인은 총 70명인데, 이들 보증인들도 평균 이상의 빈도로 일수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12명은 자신이 대부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즉 보증인은 반드시 다른 보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높은 인물은 아니었다. 넷째, 보증인을 세운 경우에도 불량채권이나 연체가 발생했는데, 136건 중에서 6건(4%)이 불량채권이고, 연체도 62건(46%) 정도 있다. 불량채

권의 비중은 뒤에서 보게 될 전체적 비중보다 낮지만, 연체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전당의 설정에 관해 살펴보자. 총 거래 중에서 전당을 설정한 경우는 121건이다. 여기서도 대부의 원금은 50냥부터 5,000냥까지 다양하고, 상환기간도 100일부터 512일까지 다양하다. 불량채권은 1건밖에 없지만, 연체는 상당히 많아서, 121건 중 65건(54%)에 달했다.

보증인이나 전당을 설정한 경우에 불량채권의 비중이 전체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연체율은 높았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는 경제력이 상당히 약한 영세상인에게 보증인과 전당이 요구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면적인 신용거래로서 일반적인 담보 대부보다 더 낮은 단계의 일수금융 거래를 하는 과정, 즉 소규모 영세금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의 역할은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정도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었고, 전당 잡은 집문서의 가치가 상당히 큰 것도 아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보증이나 전당을 설정한 대부의 비율이 전체의 5%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음으로 미루어 볼 때, 보증이나 전당을 강제할 수 있었던 법적 제도조차 없었으며, 일수금융의 일반적 관행도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8. 不良債券

<表 9>는 전체 대부를 원리금의 상환 상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상환의 결과가 不明한 2건을 제외한 2,118건 가운데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대부는 2,003건(95%)이다. 반면에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잔금이 있는 불량채권은 115건(5%) 정도이다. 한국 1960~80년대의 정책금융 시대에 불량채권이 은행자본의 평균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의외로 낮은 양호한 수준이다.

'양호'는 만기일 이내에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경우이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채권이 1,327건(63%), 만기일 이전에 선결제 방식으로 회수를 마친 채권이 72건(3%), 일시적인 연체가 있었으나 만기일 이전에 선결제 방식으로 회수된 채권이 37건(2%)이다. 이와 같은 양호한 채권은 총 2,118건 중에서 1,436건(68%)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만기일을 초과하여 연체한 후 원리를 상환한 경우(567건, 27%)나 결국 상환 불능의 잔금이 남은 경우(115건, 5%)와 같은 불량채권은 682건(32%)이다. 회수불능 채권의 미상환 금액의 규모나 만기일을 초과하여 연체한 후 결제한 경우에 대해 정확한 연체일 수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은 장부의 기록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 기회로 미

〈表 9〉 元利金의 償還 狀況에 따른 債券의 分類

구분		건수	비율	합계
양호	정상 결제	1,327	62.7%	67.8%
	선결제	72	3.4%	
	연체후 만기일 이전 선결제	37	1.8%	
불량	만기일 초과 연체후 결제	567	26.8%	32.2%
	회수불능의 채권	115	5.4%	
합계		2,118	100.0%	100.0%

룬다.

연체의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상요구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리의 일부를 減, 在減, 蕩減 등의 형식으로 기재한 후 탕감해 주는 경우가 비록 적지만 9건이 보인다. 회수불능이 된 채권이 결국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불명이지만, 때때로 그 불량채권자와 거래를 다시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9. 맷 음 말

이상과 같이 규장각에 있는 1890~1907년에 걸친 세 일수장부를 분석한 잠정적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수 거래의 대상은 서울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반경 3km 이내의 413명의 상인들이다. 절반 정도의 거래는 10회 이상 거래한 단골과의 안정적인 관계였다. 일수업은 1901년부터 쇠퇴해 갔지만, 현재 그 이유는 불명이다.

둘째, 거래의 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의 기간과 크기와 이자율의 관계로부터 뭔가 근대적인 경제적 합리성에 맞는 법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금 대 이자 비율’은 일률적으로 20%이지만, 대부의 기간까지 고려한 이자율은 평균 84%의 높은 수준이다.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의 실질부담이 가벼워지는데, 거래를 반복한 단골이나 거래의 규모가 큰 고객에게 그러한 유리한 조건의 대부가 주어지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안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기본적으로 무담보 신용거래이므로 보증인이나 전당을 설정한 거래는 적지만, 그 설정방식에 관해서도 논리적인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예컨대 보증인과 전당의 설정은 대부의 크기나 기간과 별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영세한 상인을 대

상으로 하여 불량채권의 발생을 막기 위해 그것들이 요구된 것으로 보이지만, 연체를 방지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불량채권에 관해서는 어떠한 징벌전략이 취해졌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일수업자와 대부인들은 그들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골거래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대문 인근의 하층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專業的 日收業者는 교섭의 비용이 불필요할 정도로 영세한 단기금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면거래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량채권의 비율이 낮고, 보증이나 전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적으며, 보증이나 전당이 강제되는 법적 제도도 없었다. 연체나 불량채권에 대한 징벌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사례이나마 탕감이라는 형태로 채무를 면제해 주기도 한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을 따진다면, 이와 같은 거래의 조건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보다 긴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부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하층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 日收業者에게서 돈을 빌릴 때 상환기간 설정의 교섭에 실패한 경우 다른 형태의 금융업에 의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즉 한 업자에게 대출을 거부당했을 때 다른 업자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다른 상인 개인에게 빌린다거나 할 수가 없었다. 이는 또한 ‘일수’라는 형태가 담당한 금융시장이 서울 금융시장의 최하층을 담당하면서 보다 상층의 금융시장과 분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68

팩스: (02)886-4231

E-mail: yhrhee@snu.ac.kr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博士課程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6-8186

팩스: (02)873-5460

E-mail: infopen@chol.com

參 考 文 獻

- 『廣泉鋪典當利益金查正』(奎 25278).
- 『독립신문』.
- 『順捧長冊』(奎27640).
- 『順捧冊』(奎27376).
- 『利息規例』(光武10年9月24日).
- 『日捧冊』(奎27372).
- 『典當鋪規則』(光武2年11月2日).
- 『典當鋪細則』(光武2年11月10日).
- 금융감독원(2005)：“사금융 이용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및 시사점”.
- 金允嬉(2002)：“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발전—대한천일은행 및 대자본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載昊(2001)：“農村社會의 信用과 契：1853～1934,” 安秉直·李榮薰 編, 『맛질의 농민들－韓國近世村落生活史－』, 一潮閣.
- 文定昌(1941)：“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 裴永穆(2003)：“韓國金融史：1876-1959”, 개신.
- 서울역사박물관(2004)：“都城大地圖”.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1977)：“서울六百年史” 1.
_____ (1995)：“서울六百年史” 4, 第2版.
- 吳斗煥(1991)：“韓國近代貨幣史”, 韓國研究院.
- 柳子厚(1940)：“朝鮮貨幣考”, 學藝社.
- 이규현 해설(1986)：“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 산하와 풍물” 上, 서문당.
- 이영훈 외(2004)：“한국의 은행 100년사”, 산하.
- 李燦·楊普景(1995)：“서울의 옛 地圖”, 서울학연구소.
- 全遇容(1997)：“19世紀末~20世紀初 韓人 會社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0)：“대한제국기~일제 초기 宣惠廳 倉內場의 형성과 전개—서울 남대문시장의 성립 경위—,”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 朝鮮日報社(1986)：“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현장”.
- 朝鮮總督府(1920)：“朝鮮語辭典”.

_____ (1929) : 『朝鮮の市場經濟』.

朝鮮總督府 朝鮮臨時土地調查局 編(1985) :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下, 景仁文化社
影印本.

崔承熙(1997) : “朝鮮後期 古文書를 통해 본 高利貸의 實態,” 『韓國文化』, 19.

洪性讚(1981) : “韓末·日帝下의 地主制研究,” 『韓國史研究』, 33, 韓國史研究會.